

중국 해관 및 국제무역 공유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해설

2024 년 5 월

개요

현재 수출입 화물에 대한 중국 해관의 관세 징수 근거는 주로 법률 문건인 《해관법》, 행정 법규 문건인 《관세조례》, 《원산지 조례》 등, 그리고 해관총서가 발행한 관세징수관리, 상품분류, 가격평가, 원산지 등 방면의 행정규정 및 규범화 문건 등을 포함합니다.

《입법법》에 근거하여 확립된 “조세법정” 원칙에 따르면, 법률 관점에서 세목 설정, 세율 결정 및 세금 징수관리 등 조세의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해야 합니다. 《관세법》 초안 작성이 완료된 후, 2023 년 12 월 29 일부터 공개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받은 개선 의견에 따라 수정된 2 차 검토안은 2024 년 4 월 26 일 제 1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23 호 공표를 거쳐 공식 법률이 되었고 2024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관세법》의 공표는 대외무역 발전, 제도형 개방 확대, 고품질 발전 추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세 법정 개혁을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치가 됩니다.

세부 내용

현행 관세 법규 제도 대비 《관세법》의 주요 변화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관세법》은 현행 관세 제도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행 후 관세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세법》은 법률 수준 상향 조정 후 세목, 세율 조정 권한, 신규 비즈니스 형태와 무역 모델에 따른 납세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세 징수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해관이 국제 무역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채택한 관세 징수관리 관련 성숙한 경험과 관행을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합니다. 논란이 있는 여러 불분명한 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세금 징수관리 법규와 일관성 있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관세법》은 현행 관세 징수관리 법규와 비교할 때 주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1. 세목, 세율 조정 권한 및 프로세스의 규범화 및 명확화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항목	《관세법》 규정	《관세조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에서 약정한 최혜국세율, 할당관세율 및 수출세율의 조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국무원 심사를 통과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	관세세칙위원회는 《세칙》의 세목, 세칙번호, 세율에 대한 조정 및 해석을 담당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에서 약정한 범위 내의 최혜국세율, 할당관세율 및 수출세율의 조정, 특별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지역, 화물 범위 및 세율의 조정, 또는 일반 세율의 조정.	국무원이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등록).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할당관세율을 결정.
특수 상황하의 최혜국세율의 적용.	국무원이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등록).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
협정 세율	관련 국제 조약, 협정의 심사 또는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실시.	구체적인 권한 조정 조문이 없음.
잠정세율의 화물 범위, 세율 및 기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
관세 세목 조정 관련 세율의 기술적 전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보장조치 관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	
보복관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	

2. 신규 비즈니스 형태와 무역 모델에 따른 납세 의무와 책임 명확화 —— 원천징수 의무자 및 벌칙

원천징수 의무자	벌칙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종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물류기업 및 통관기업,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및 징수 대행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관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임.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금의 50%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3. 현대적인 관세 징수관리 시스템 구축 — 해관 관련 성숙한 경험 및 실무를 위해 법적 근거 제공

해관의 성숙한 경험 및 실무	《관세법》 규정
전국 통관 일체화	화물 수출입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해관을 선택하여 납세 신고를 처리할 수 있음.
2 단계 신고	관세 징수관리는 화물 통관과 세액 확정을 분리하는 모델로 구현할 수 있음.
집중 과세	화물 수출입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고 완료일부터 15 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익월 5 영업일 종료 전까지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음.

4. 논란 사항의 명확화 — 세금 우선, 반조세회피

쟁점	《관세법》 규정
해관의 세금 징수 우선	<p>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해관에서 징수한 세금은 무담보 채권보다 우선함. 납세자의 자산이 저당권 또는 질권으로 설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실행되기 전에 납세를 집행해야 함.</p> <p>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함과 동시에 행정당국으로부터 벌금 부과, 불법 소득 몰수 등 처벌을 받게 되어, 그 자산으로는 이를 동시에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함.</p>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과세액 감소	본 법률 제 2 장, 제 3 장의 관련 규정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이 과세액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관세 조정 등 반조세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기타 세금 징수관리 법규와의 일관성 — 세금 환급 및 보충 납부 연한

《세수징수관리법》 규정	《해관법》 규정	《관세법》 규정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세무당국은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해야 함. 납세자가 세액을 정산납부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이를 발견한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과납 세금을 환급받는 것과 더불어 같은 기간 은행 예금 이자를 가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해관이 과다 징수한 세금과 관련하여, 해관은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해야 함.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해관에 세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해관은 세금을 과다 징수한 것을 확인한 경우, 적시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환급 절차를 처리해야 함.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징수한 것을 발견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해관에 과납 세금을 환급해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세무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3 년	수출입 화물, 출입국 물품이 통관된 후 해관에서 세금이 과소 부과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금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을 통관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해관은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의 과세액을 확인할 권리가 있음.

이내에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을 보충 납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연체료는 부과할 수 없음.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계산 착오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3년 이내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상황에 따라 추징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탈세, 납세 거부, 세금 사취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금, 연체료, 사취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납부일 또는 화물, 물품 통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세 의무자로부터 보충 징수를 요청해야 함. 납세 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이 과소 부과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관은 3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음.

해관이 확인한 과세액이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한 과세액과 다른 경우, 해관은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액확인서상 금액에 따라 해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보충 납부하거나 세금 환급 절차를 처리해야 함.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이 과소 부과되거나 누락된 경우, 해관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을 통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거나 화물을 통관한 날로부터 과소 납부한 세액 또는 누락 세액에 대해 일일 0.05%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음.

밀수행위에 대해 해관이 세금, 연체료를 추징하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과세액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

PwC의 관찰 및 건의사항

《관세법》은 해관과 국제무역 영역의 중요한 법률로, 법적 차원에서 관세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관세 세칙, 조세부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관이 무역 편리성을 위해 채택한 새로운 세금 징수관리 모델을 법적 형식으로 확정하여 수출입 기업이 수입세 납부에 있어 보다 큰 확실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세법》에 대해 PwC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세의 세금 징수 및 납부에 대해 보다 중성적인 서술로 변경함.** 《해관법》 및 《관세조례》와 비교할 때 《관세법》은 세금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해관의 검토/심사의 서술을 약화시켰는데, 이는 현행 “자체 신고 및 납부”라는 납세 모델의 관리 이념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신고에 대해 보다 높은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 2. 미래 징수관리 혁신이 보다 기대됨.** 《관세법》에서는 입법 목적에 “대외무역 촉진, 고품질 대외개방 추진, 고품질 발전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음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법률 조항에는 해관 세금 징수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고려하고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PwC는 이와 같은 입법이 있어 해관 및 관계부서가 향후 더 많은 국제 무역의 신모델과 새로운 비즈니스형태에 적응하기 위해 세금 징수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혁 및 혁신을 한층 더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 3. 최근 법규의 개정 및 갱신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상위 법률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관세법》의 일부 원칙 규정 에 대한 세칙을 제정하기 위해 국무원 관련 행정 법규와 해관의 부서 규정이 《관세법》 공식 시행 전 집중적으로 개정 및 갱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세법》의 승인 및 공표는 《해관법》의 개정 작업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가격심사방법》 등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대한 개정과 갱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세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여러 수출입 기업은 자체 수출입 사업과 세금 납부 상황이 《관세법》 및 관련 법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세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에, PwC는 아래와 같이 권고드립니다:

- 1. 기업 내부 신고 납세 프로세스 및 조세 요소의 정확성을 적극적으로 자체 검사함.** 《관세법》의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이미 공표되었으므로, 기업은 조항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수출입 사업의 신고 및 납세 프로세스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정리하고 수출입 화물 및 상품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조세 요소의 정확성에 대해 자체 검사 및 조세 위험 평가를 실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2. 자발 공개, 사전 결정 등 방법을 통해 조세 위험을 통제하고 보다 높은 조세 확실성을 획득함.** 자체 검사를 통해 발견한 조세 문제에 관해서, 자발 공개의 방식으로 해관에 보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연체료 및 행정 처벌을 면제하도록 노력하고 상품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조세 요소와 관련하여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해관에 상응하는 사전 결정을 신청하여 조세확실성을 획득하고 미래 잠재적 조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관과 소통중인 구체적인 조세 문제에 관해서 세금 추징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이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3. 법규 갱신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 국무원과 해관의 관세 관련 법규는 《관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크게 개정 및 갱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법규 갱신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갱신된 법규에 따라 적시에 자체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조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해관이 규정을 갱신할 때 과거 해관과 기업 간 논란이 비교적 컸었던 규정 및 조항을 같이 개정하거나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규정의 갱신 및 개정에 건의사항을 제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PwC의 전문 서비스

관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PwC는 아래 방면에서 기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기업을 협조하여 수출입 업무 진행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개선함.
2. 기업을 협조하여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수행하고 잠재적 위험을 발견함.
3. 기업을 협조하여 상품 분류, 가격, 원산지 등 기술적 문제를 판단함.
4. 기업을 협조하여 해관과의 조세 요소 논쟁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해관과 소통함.
5. 기업을 협조하여 해관에 조세 요소의 사전 결정을 신청함.
6. 기업을 협조하여 조세 문제에 대해서 해관에 자발 공개를 신청하고, 전문적인 기술 및 프로세스 건의사항을 제공함.
7. 기업을 협조하여 해관과 소통하고 세금 징수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건의사항을 제공함.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수연 (86) (21) 5368-4085 suyon.s.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Elaine Chen (86) (21) 2323-8093 elaine.yl.chen@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0) 3819-2531 younggi.y.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해관 및 국제무역에 대한 PwC의 실무

중국에서는 해관 및 국제무역의 문제가 복잡하지만, 정확한 솔루션이 있으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계획과 체계적인 솔루션은 비용을 절감하고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외의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PwC의 전문 인력은 중국 본토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의 해관과 국제무역 영역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물 수출입 관련 의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동시에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PwC 국제무역 서비스부서는 글로벌 해관 및 국제무역 컨설팅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으며, 1992년 아시아에 진출한 이후 지역적, 종합적 역량이 강한 팀으로 발전했고 여러 주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전문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wC의 팀은 아시아 현지 인원과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갖춘 외국 인력으로 구성되며, 전임 정부 인사, 해관 인사, 국제무역 변호사, 회계사뿐만 아니라 물류, 해관 및 국제무역 등 전문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pwccn.com

© 2024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